

보도 일시	2022. 7. 6.(수) 13:30 2022. 7. 7.(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7. 6.(수) 13:30
담당 부서 <총괄>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지원과	책임자	과 장 금정수 (044-202-8920)
		담당자	사무관 권보미 (044-202-8930)
<공동>	산업안전보건공단 법무지원단	책임자	단 장 조동제 (052-703-0181)
		담당자	차 장 김광일 (052-703-0184)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우수사례 발표

-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기간(7.4~7.8.) 중 [주]한국필립모리스, [주]삼성물산, 부산환경공단, [주]한국남동발전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

-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안종주 이사장)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4~7.8.)」을 맞아 7.6.(수)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 이번 발표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 발표회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공공 및 발주처, 기타업종 등 4개 분야 별로 각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소개됐다.
- 제조 분야는 [주]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이, 건설 분야는 [주]삼성물산에서, 공공 및 발주처 분야는 부산환경공단이, 기타 업종분야는 [주]한국남동발전이 발표를 했다.
 - 한국필립모리스(주) 양산공장은 연간 400억 개비의 담배 생산 능력을 갖춘 최첨단 스마트 공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각 공정별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연간 목표를 수립하여 개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안전 개선 의견과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삼성물산(주)은 건축·토목·플랜트·주택사업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종사자 보호를 위해 안전을 경영의 제1원칙으로 선언하고,
 - ①안전보건조직 강화, ②최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위험관리 모니터링, ③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공법 선정, ④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⑤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부산환경공단은 환경전문 공기업으로서 안전사고 없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하여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제정하고, ‘안전관리처’라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했다.
 - 또한,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 한국남동발전은 국내 전기공급량의 6.9%를 생산하는 발전 공기업으로 ‘안전 최우선가치 경영 선도’라는 안전경영방침을 통해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안전보건처’라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안전전담 인력과 안전 예산을 증액했고,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설기계 유도자 상시 배치’, ‘안전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4개 기업의 발표 자료는 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에 게시하여 많은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www.kosha.or.kr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www.koshasafety.co.kr

-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표해주신 기업들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핵심 사항”이라며, “오늘 발표회를 계기로 많은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방법론을 공유하여 안전문화가 산업현장에 안착되기를 바라며, 정부에서도 우수사례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널리 알려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세미나(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시행 사례) 개요
2.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개관
 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도



붙임 1

세미나 개요(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시행 사례)

- 일시 : '22. 7. 6.(수) 13:30 ~ 16:00
- 장소 :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 403호(수용 가능인원 200명)
- 참여자
 - 발표자: 제조업(주필립모리스 양산공장), 건설업(주삼성물산), 공공기관(부산환경공단), 기타업종(주한국남동발전) 각각 15분 발표
 - 토론자: 안전/건설/공공/기타분야 분야별 전문가 1명(10분 질의응답)
- 진행방법: 분야별 경영진 발표와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실시
- 주요내용
 - (설명<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및 경영책임자의 역할
 - (발표<4개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추진상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질의응답)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
- 진행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40	인사말씀	안전보건공단 경영자총협회
13:40-13:50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취지 및 경영자 역할 설명	고용노동부
13:50-14:15	(발표1: 필립모리스 양산공장) 발표 및 질의응답	분야별 기업 대표
14:15-14:40	(발표2: 삼성물산) 발표 및 질의응답	
14:40-15:05	(발표3: 부산환경공단) 발표 및 질의응답	
15:05-15:30	(발표4: 한국남동발전) 발표 및 질의응답	
15:30-16:00	참석자 토론 및 마무리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개관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제4조제1항제1호)

-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제1항제2호)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3호)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4조제1항제4호)

-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 ②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 ③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점검
- ④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도

